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97	서미화의원	'24. 9. 2.	'24. 11. 14.
	2218298	소병훈의원	'26. 4. 13.	'26. 9. 11.
	2218450	이수진의원	'26. 4. 20.	'26. 9. 11.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계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을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를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3항·제4항”을 “제8조제4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내”를 “신청 간주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u>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을 말한다. 2. ~ 7.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 -----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u>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② (생략)

<신설>

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략) <신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 ----- ----- 신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u>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u>제2항</u>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3항</u>에도	<u>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u> ③ ----- ----- <u>제1항 및 제2항</u>----- ----- ----- ----- ----- ----- -----. ④ ----- --- <u>제3항</u>----- ----- -----. ⑤ ----- ----- <u>제4항</u>-----
--	--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
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2. (생 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
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
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
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
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
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
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
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
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
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제8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
다.

⑤ -----

----- 제8조제4
항·제5항-----
-----.

⑥ -----

----- 신

